

# 기준경비율 신고



# 1 기본사항 작성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납세자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고,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이 뜹니다.

소득 종류	신고안내 기준	선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	이중근로인내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또는 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초과자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종합과세대상 2,000만원 초과자	<input type="checkbox"/>

· 분리과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선택하지가 바랍니다.

소득 종류	신고안내 기준	선택
분리과세 소득	- 주택임대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종합과세로 신고 가능하며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 동일 사업장에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인 주업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금액은 자동입력해 주지 않으니 신고유형별 해당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시기 바라며, 아래 화면의 수입금액을 참고로 하되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선택하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소득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p><b>클릭!</b> → <b>위 내용대로 적용하기</b> <b>직접 입력하기</b></p>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며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한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인 기본사항 새로작성하기 신고서볼러오기

• 개인단체 구분  개인  단체(중중) ※ 개인 또는 단체(중중)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 귀속년도 2021  \* 납세자 번호 ..... - .....  조회 성명 박\*\*\*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 휴대전화 010 - 1111 - 1111 • 주소지 전화  -  -

• 사업장 전화  -  -  전자 메일  @  직접입력

○ 신고서 기본사항

신고유형 -선택-  •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신고구분 정기(확정)  분리과세 여부  여  부

• 내·외국인 내국인  \* 거주구분 거주자  •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조회

• 장애인 여부  여  부 ※ 비장애인이 "예"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하시면, 소득종류와 사업장 명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기타소득)

- 신고인 기본사항에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의무 란에는 신고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를 선택합니다.
-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가 모두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로 선택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코드	신고유형															
<p><b>사업소득 기본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종코드 입력 시 인적용역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으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주업종코드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li> <li>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건 조회됨).</li> <li>※ 940906(보험모집인), 940907(음료배달원), 940908(방문판매원) 업종은 업종코드 입력하고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입력하여 「등록하기」 누르고 나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입력후 기준경비율 등 다르게 입력이 가능함 (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신고유형이 다른 2건 이상이 조회됨)</li> </ul>																				
사업자등록번호	있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조회															
업종코드	<input type="text"/>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																		
소득구분	<input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 <input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input type="radio"/>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		<input type="radio"/>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1) <input type="radio"/>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1)																	
업태	<input type="text"/>					종목	<input type="text"/>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	기준경비율																
주소	드르명 주소 : <input type="text"/> 지번 주소 : <input type="text"/>																			
소재지	국내	소재지국	KR	대한민국																
공동사업자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여" 선택 후 대표자를 입력하세요		비과세농가 부업소득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등록하기</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font-weight: bold; color: red;">1 클릭!</div> </div>																				
<p><b>세무대리인</b></p> <table border="1"> <tr> <td>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d>성명</td> <td colspan="4">전화번호</td> </tr> <tr> <td>대리구분</td> <td>-선택-</td> <td>관리번호</td> <td colspan="2">조회</td> <td colspan="2">조정번호</td> </tr> </table>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전화번호				대리구분	-선택-	관리번호	조회		조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전화번호																	
대리구분	-선택-	관리번호	조회		조정번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저장 후 다음이동</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font-weight: bold; color: red;">2 클릭!</div> </div>																				

**사업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있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고,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 주업종코드는 조회버튼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 을 이용해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 기장의무 란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 란에는 [기준경비율]를 선택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는 다수의 사업장을 입력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2 소득금액명세서

4 기준경비율

**주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

1) [사업장 정보] 에서 한건씩 체크하여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2) 선택한 사업장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9.총수입금액>에 입력 및 <경비율 적용기준>을 선택 후 「아래 표에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표에 등록하기」버튼 아래에 입력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3) 기입력 했던 총수입금액을 수정·삭제하려면 [업종별 수입금액] 의 「선택내용 수정」 및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주요경비가 있는 경우 [합계(소득구분별·사업장별)] 및 [주요경비 계산명세]에 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주계과세 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업장 정보**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코드	상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31	000-00-00000	940906		0	0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의 [소득금액 계산(업종별)]로 입력하세요.

**소득금액계산(000-00-00000, 940906)(업종별)**

· 1개의 사업장에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 먼저 주업종코드 및 총수입금액 등을 입력후 「아래 표에 등록하기」버튼 클릭하고, 부업종코드 및 총수입금액 등을 입력 합니다. (「아래 표에 등록하기」버튼 아래에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입력한 2건이 조회됨)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소득구분	40
업종코드	940906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업태	합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보험설계사
기장외무(※ 기준경비율 및 비교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9. 총수입금액				50,000,000	
경비율 적용기준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율 <input type="radio"/> 자가율	
14. 기준경비율	일반율 25.0 %	자가율 25.0 %			
15.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6,250,000	
18. 단순경비율(%)	일반율 77.6 %	자가율 68.6 %			
19.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9*(1-18))	세법도우미			12,100,000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세법도우미			<input checked="" type="radio"/> 3.4 <input type="radio"/> 2.8	
20. 비교소득금액(19*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41,140,000	

아래 표에 등록하기

← 클릭!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사업소득명세서
- 04. 기준경비율
- 05. 주계소득금액계산서
- 06. 종합소득금액및결산금 이월금손관공제명세서
- 07. 소득공제명세서
- 08.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9.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10. 세액공제 감면준비금
- 11. 가산세명세서
- 12. 가납부세액명세서
- 13. 세액계산
- 14. 신고서제출

주계소득금액계산서 수입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9번 항목에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경비율 적용기준 항목에 일반율 또는 자가율을 선택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아래표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및 업종별 총수입금액 항목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구분별, 사업장별 합계 목록 화면에서 비교 소득금액 항목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9. 총수입금액		50,000,000
10.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11.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34.합계 금액과 일치)		3,000,000
12.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13. 계(10+11-12)		3,000,000
15.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6,250,000
16. 필요경비 계(13+15)		9,250,000
17. 기준소득금액(9-16)		40,750,000
19.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12,100,000
20. 비교소득금액		41,140,000
21. 소득금액(17 또는 20 중 적은 금액)		40,750,000

※ 정규증빙제출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일용근로·근로·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조회 하시려면 선택하여 클릭하세요.  
 다만, 안내자료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6억원이상이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조회서비스를 사용할수 없음.

⑤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작성요령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외(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작성하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22 1,000,000	23 1,000,000	24		25	
임차료	26 1,000,000	27 1,000,000	28		29	
인건비	30 1,000,000	31 1,000,000	32		33	
합계	34 3,000,000	35 3,000,000	36	0	37	0

등록하기 ← **① 클릭!**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② 클릭!**

주요경비 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화면입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구분별, 사업장별로 주요경비 계산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정규증빙제출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지급명세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외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순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입력합니다.
- 주요 경비 계산명세 항목에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력방법은 **[작성요령]**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11번 항목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동영상(사업소득명세서 등)

**사업소득명세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31, 41)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후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여 합니다.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 입력

선택	소득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업종 코드	기장 의무	신고 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공동 사업	농가 부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000-00-000...		9409...	01	31	50,000,000	9,250,000	40,750,000	부	부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명세서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변경하신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값을 확인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택수(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0	0	0
주택임대소득	0	0	0	0
합계	0	0	0	0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이전 단계에서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상호	<input type="text"/>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input type="text"/> 원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input type="text"/> 원

**등록하기** ← **1 클릭!**

<input type="checkbox"/>	NO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2 클릭!**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화면입니다.

- 입력한 사업소득 명세서가 보여지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불러오거나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손금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3 소득공제명세서

**문답내용**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까?  
 예  아니오

2. 부양가족이 관계인입니까?  
 예  아니오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소득세법)**

> 인적공제 등록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중소기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주민등록번호: ..... - ..... **확인**    성명: .....    내국인:  내국인  외국인

기본공제:  해당자     미해당자    관계: **관계**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제외)

인적공제항목:  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 2016년 귀속 부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달리 화면에서 <기본공제>에 미해당자로 체크하여 등록하면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클릭!**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는 보고서 출력시 최대 8개까지만 표시됩니다.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NO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현
<input type="checkbox"/>	1	*****_*****	박***	소속자 본인	Y	N	N	N	

> 인적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명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0명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0명	8. 인적공제 계	1,500,000

소득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 합니다.
-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등록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항목에 선택내용이 표기됩니다.
-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1. 국민연금보험료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2,000,000	15. 특별공제_주택자금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12. 기타연금보험료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16. 특별공제_기부금(이월분)	0
13. 주택담보보후연금이자비용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17. 특별공제_계(16)	0
14. 특별공제_보험료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2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0
1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0	25.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20. 주택마련저축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2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22. 신용카드 등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27. 계(18+ ~ +26)	0
23.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 소득공제 합계 및 한도초과액

28. 소득공제 합계(8+11+12+13+17+27)	5,000,000	2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15+19+23+26-2,50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	-----------	---	---

이전  ← **클릭!**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간 납입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화면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입력대상 선택내용 입력/수정

<input type="checkbox"/>	공제구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	신고유형	주업종코드
	세액(소득)	필요경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_*****	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00-00-00000		40	기준경비율	940906

※ 해당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후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 \*\*\*\*\*\_\*\*\*\*\*    성명: 박\*\*\*

• 유형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기부내용: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_\*\*\*\*\*    기부자 성명: 박\*\*\*    기부자 관계: 거주자(본인)

기부자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    기부자 상호:

• 기부내역 건수:     기부내역 합계금액:

•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기부금:

등록하기 ← 클릭!

-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대상 항목에서 공제대상 및 공제구분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만 산입이 가능하며,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유형코드에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내용, 기부자, 건수, 기부금액 등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삭제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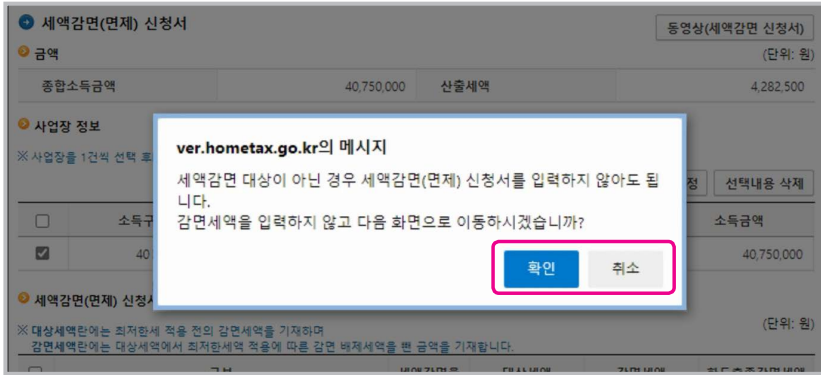
> 기부금 유형별 합계 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코드	당해연도							이월분
	기부자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총 계	200,000	200,000	0	0	0	0	0	0
10	200,000	200,000	0	0	0	0	0	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클릭!

-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세액감면(면제)신청서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감면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감면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감면세액을 입력합니다.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공제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및결산금 이월결산금공제명세서
- 05. 소득공제명세서
-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8. 세액공제·감면·준비금 명세서
  -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세액공제신청서
  - ☐ 세액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
- 09. 가산세명세서
- 10. 가납부세액명세서
- 11. 세액계산
- 12. 신고서제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금액 (단위: 원)  
 종합소득금액 40,750,000 산출세액 4,282,500

사업장 정보  
 ※ 사업장을 1건의 선택 후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내용 입력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내용 입력/수정 선택내용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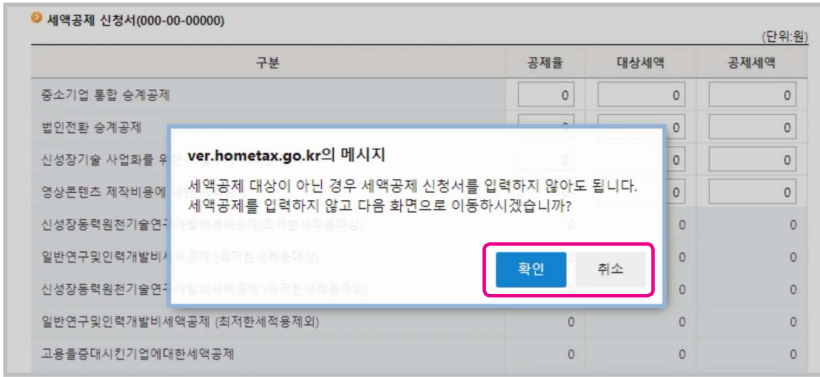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31	000-00-00000		40,750,000

세액감면(면제) 신청서(000-00-00000) (단위: 원)

※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기재하며  
 감면세액란에는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구분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한도중속감면세액
<input type="checkbox"/>	(100)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0
<input type="checkbox"/>	(105)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0
<input type="checkbox"/>	(106)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8)지방이전중소기업공장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0)농·산·수산업중소기업세액감면	0	0	0	0

- 사업자별 세액감면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 세액감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세액공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공제세액을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동명상(세액공제 신청서))

금액 (단위: 원)

종합소득금액	40,750,000	산출세액	4,282,500
--------	------------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을 1건씩 선택 후 [선택내용 입력/수정]를 클릭하여 내용 입력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내용 입력/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40	31	000-00-00000		40,750,000

세액공제 신청서(000-00-00000) (단위: 원)

구분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
중소기업 통합 승계공제	0	0	0
법인전환 승계공제	0	0	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	0	0	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0	0	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	0	0	0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	0	0	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	0	0	0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	0	0	0
고용률증대시킨기업에대한	0	0	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	0	0	0

- 사업자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 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동영상(세액감면·공제 준비금)

⑤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도움말 (단위: 원)

구분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조세조약(원어민교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장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급여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text"/>	
합계	0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⑤ 세액공제명세서 (단위: 원)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되며, 입력한 특별세액공제가 작아도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자녀세액기본공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도움말</span>	1 명		150,000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도움말</span>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text"/> 명		0	
연금계좌세액공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자동계산</span>	0		0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				
일반 보장성 보험료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자동계산</span>	0		0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0		0	
의료비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자동계산</span>	0		0	
교육비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자동계산</span>	0		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도움말</span>	1,010,000		202,00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도움말</span>				
정지자금지부금_10만원 이하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도움말</span>				
정지자금지부금_10만원 초과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도움말</span>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도움말</span>				
표준세액공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도움말</span>			70,000	

소득세법상 인별 세액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

도움말 펼치기

(단위:원) 불러오기

항목	구분	지출금액
① 과학기술인공제		0
② 퇴직연금		0
③ 연금저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50세 이상	0
④ 소계(① + ② + ③)		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항목	지출금액
ISA계좌 만기 시 퇴직연금계좌	0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	0
ISA계좌 관련 공제대상금액	0
ISA계좌 관련 세액공제액	0

1 클릭! → 계산하기 적용하기 ← 2 클릭!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자동계산] 버튼을 이용하여 지출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단위: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자금자임금 이자상환세액공제	도움말		0	
월세액 세액공제	도움말	0	0	
전자신고 이월 세액공제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20,000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도움말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도움말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코드	준비금				사업자등록번호
			손금산입 연도	손금산입 금액	당기환입액	환입액 누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클릭!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6 가산세명세서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05. 소득공제명세서
-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 09. 가산세명세서**
- 10. 가납부세액명세서
- 11. 세액계산
- 12. 신고서제출

➊ 가산세명세서
등영상(가산세 명세서)

<b>금액</b>	(단위: 원)		
종합소득금액	40,750,000	산출세액	4,282,500

(단위: 원)		
<b>사업장 정보</b>	상호	수입금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50,000,000

(단위: 원)				
<b>무신고 가산세</b>				<input type="button" value="감면 계산기"/>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40/100 (60/100)	0
부정무신고	수입금액	0	14/10,000	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20/100	0
일반무신고	수입금액	0	7/10,000	0

(단위: 원)				
<b>과소신고 가산세</b>				<input type="button" value="감면 계산기"/>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40/100 (60/100)	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0	14/10,000	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10/100	0
부당감면·공제	공제세액	0	40/100	0

➋ 무기장 가산세
**클릭!**
→

산출세액	무기장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4,282,500	40,750,000	40,750,000	4,282,500	20/100	856,500

※ 무기장 가산세액 =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 무기장 가산세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장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➌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제출·불성실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0	0.5/100	0

가산세 합계	0
--------	---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무기장 가산세 항목에서 무기장소득금액 란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입력되어 보이며, 화면 우측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자동으로 가산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7 기납부세액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등영상(기납부세액 명세서)    화면도움말

·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의 근로소득(8)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자강 징수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이 화면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2-가-5.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2-나. 근로·기타·연금소득명세서, 2-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메뉴의 원천징수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에납세액	<input type="text" value="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input type="text" value="0"/>	
수시부과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자소득	0	
배당소득	0	
사업소득	300,000	0
근로소득	0	0
연금소득	0	
기타소득	0	
합계	300,000	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및결산액이월결산금액계열명세서
05. 소득공제명세서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8. 세액공제, 감면준비금
09. 가산세명세서
10. 기납부세액명세서
11. 세액계산
12. 신고서제출

기납부세액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중간에납 세액이 있을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원천징수세액 등 입력하는 경우 파란 박스의 설명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8 세액계산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및결산금이익결산금액증명세서
- 05. 소득공제명세서
-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8.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09. 가산세명세서
- 10. 기납부세액명세서
- 11. 세액계산**
- 12. 신고서제출

## 세액계산

동영상(세액계산)    화면도움말

### 세액의 계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 금융소득과 부동산대매업의 세율은 0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후 신고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19 40,750,000	
소득공제	20 5,000,000	
과세표준(19-20)	21 35,750,000	41 <input type="text" value="0"/>
세율(%)	22 15.00	42 <input type="text" value="0.00"/>
산출세액	23 4,282,500	43 0
세액감면	24 0	
세액공제	25 442,000	
종합과세(23-24-25)	26 3,840,500	44 0
결정세액	27 0	45 0
합계(26+27)	28 3,840,500	46 0
가산세	29 856,500	47 <input type="text" value="0"/>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0 <input type="text" value="0"/>	48 <input type="text" value="0"/>
합계(28+29+30)	31 4,697,000	49 0
기납부세액	32 300,000	50 0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33 4,397,000	51 0
납부특례세액자감	34 0	
납부특례세액가산	35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36 <input type="text" value="0"/>	52 <input type="text" value="0"/>

###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33-34+35-36)	4,397,000
농어촌특별세(51-52)	0

※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용할바탕을 클릭하세요.

도움말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화면으로 간편하게 신고)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

**체크!**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 **클릭!**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 집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동영상(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신고서내용 요약**

소득자	박*** ( 571113-*****)	
귀속년도	2021	
신고유형	정기신고(31기준경비율)	
종합소득금액	40,750,000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35,750,000	0
산출세액	4,282,500	0
납부(환급)할 총 세액	4,397,000	0
납부특례세액자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4,397,000	0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개인정보 제공동의**

※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환급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위탁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체크!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및결산 금액 불일치금액계정서

05. 소득공제명세서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8. 세액공제 감면표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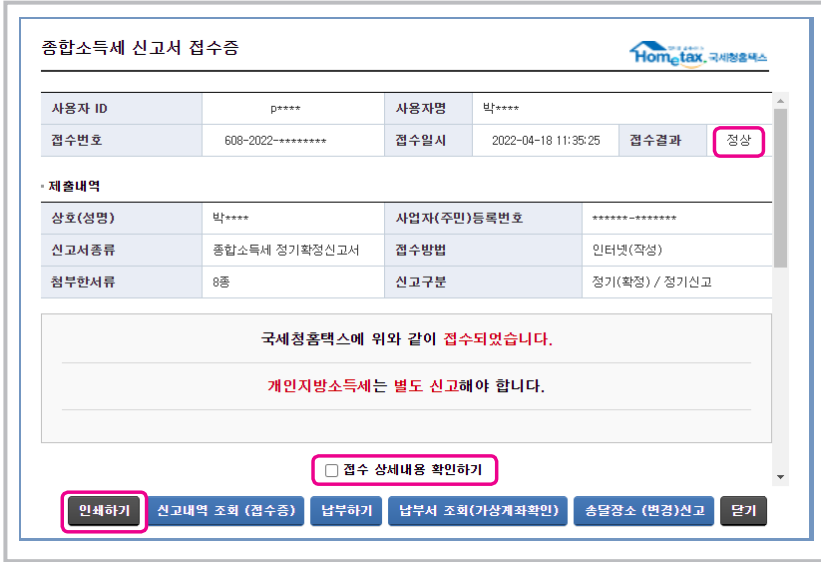
09. 가산세명세서

10. 기납부세액명세서

11. 세액계산

12. 신고서제출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 목록** ✕

- [납부할금액(원)]은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지방소득세 금액은 불포함)
- 납부할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 지방소득세의 납부서버튼 클릭시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 또는 서울시 ETAX)로 자동 연계되어 납부서 출력 (연계 지연시 재접속 시도)
- ※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서 전자번호조회납부, CD/ATM,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 은행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가능 (07:00~22:00)

주민등록번호	●●●●●-●●●●●●	☑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
성명	****	서울시 ETAX : 02-3151-3900 (평일 9~18시)
접수일시	2022-05-16 11:24:03	WETAX: 110번 (월~금 9~21시 토 9~13시)

※ 팝업창이 안 뜰 경우, [도구-팝업차단끄기] 설정 필요

과세연월	납부할금액(원)	납부기한	납부서	지방소득세
	4,397,000	2022-05-31		

-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 항목에서 Y로 조회됩니다.
- 상단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회의를 통해 부속·증빙서류 상세내역 확인 및 추가 제출 가능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일 선택 조회(납부일)**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 버튼 이용)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제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이도 환급됩니다.
- <납부여부> 항목은 **전자신고 시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제출금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19년 1월 이후 신고한 내역부터 <납부여부>가 조회되며, 신고서의 **생략과 납부한 세액(납 등 추가 납부서 포함)**이 일치하는 경우만 Y로 조회 됨
- 납부한 이후 납부결과 반영에는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2시 이후 납부결과에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

● 신고서 제출목록

신고일자 2022-03-19 ~ 2022-04-18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정보 공개여부  예  아니오 ※ 정보 공개 대상 :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접수유형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하기

총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개별납부서 일괄 출력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개별접수증 일괄 출력		10년	확인							
<input type="checkbox"/>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접수번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번호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납부여부
<input type="checkbox"/>	2021년1월	종합소득...	장기...	장기신고	학**	*****	인터넷...	2022-04-...	608-202-	중앙대...	보기	보기	p***	N	신규이동	접

1 / 총1건(1기)

- **[신고내역조회(접수증)]**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